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정중호 | 계명대

1. 서론

노비 해방법은 계약법전(출 21:2-11), 신명기법전(신 15:12-18), 성결법전(레 25:39-55) 등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노비가 해방된 모습을 성경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유일하게 노비를 해방시킨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주도한 해방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노비주인들이 해방시킨 노비들을 다시 불러들여 노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노비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대 한국에도 노비가 해방된 사건이 있었다. 고려의 광종이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여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얻은 노비들과, 채무노비를 해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고려 성종 때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을 만들어 해방시킨 노비들 일부를 다시 노비로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www.kci.go.kr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려 광종의 노비 해방 사건을 참조하여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시킨 동기과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동시에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시킬 때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강조하면서 노비를 해방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노비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벌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고, 전쟁 포로를 노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후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된 채무노비들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노비를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경제적 이득의 이유. 즉,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2) 신분제 유지의 이유. 즉, 몸종이나 하인 등 술거노비로서 신분제를 유지하는 사치노비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3) 군사력 활용의 이유. 시대에 따라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는 범주가 있는데 그것은 유사시 노비를 군사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비는 임노동자와 달리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노비의 관리비용이 노비생산성보다 증가하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노비주는 노비를 싼 값이라도 팔아버리거나 혹은 방면하게 될 것이다.¹⁾ 그러나 신분제 유지나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록 관리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노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왕들은 국가의 이익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비 정책을 실시하는데 노비 소유주들과는 그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다. 백성 가운데 노비 숫자가 증가하면 세금을 납부할 양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왕은 양민이 노비가 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는 없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비의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왕은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특히 노비주들이 많은 노비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왕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노비수를 줄이는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왕권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노비해방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1) Zipporah G. Glass,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TOT* 91 (2000), 27-39.

2. 노비 해방

1)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킨 사례는 예레미야 34장 8-22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8-11절에는 사건개요가 나타나고 12-22절은 아웨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웨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은 행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8-11절에 기록된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시드기야 왕은 노비를 소유한 고위 지도층과 세력가들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포위 속에 노비 해방을 약속하고 노비 주인들이 노비들을 풀어주었지만,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에서 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포위를 푼 사이 노비 주인들이 해방시킨 노비들을 다시 데려와 노비로 삼았다.

한 가지 명확하게 정의할 부분이 있다. 시드기야 왕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이다. 8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10절에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 19절에는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과'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다. 19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 계약이 예루살렘 뿐 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걸친 노비소유자들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땅의 백성'은 당시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었고 왕을 옹립할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지방 유지들이었다. 따라서 19절의 '유다 고관'과 '땅 모든 백성'이라는 계약 상대방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피난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의 '내시'와 '제사장'은 노비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시드기야 왕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노비 주인들이며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위 관료와 종교 지도자들과 세력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8절) 즉, 성전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 일반 백성들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계약에 따라 해방된 노비는 '히브리 남녀 노비'였다(9절).²⁾ 따라서 외국인

노비는 해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때 해방된 노비는 ‘히브리 남녀 노비’ 임과 동시에 채무노비였다. 「개역개정」에 임마케르(אִמְכָר)가 ‘팔렸거든’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렘 34:14) 매매노비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단어는 니팔 미완료형으로 재귀의 뜻이 있어 ‘스스로 팔았거든’으로 번역할 수 있다.³⁾ 즉,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채무노비를 가리킨다.⁴⁾

또한 이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렘 34:8), 즉, 성전에서 맺은 계약이었다. 15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계약을 파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렘 34:16).

그런데 어떻게 해방된 노비들을 그렇게 쉽게 주인들이 다시 노비로 만들 수 있었는가? 16절을 보면 노비를 추적하여 체포했다거나 강압적으로 붙잡아 왔다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개역개정」에 ‘끌어다가’로 번역되어있지만 이 단어는 슈브(שׁוּב)의 히필형으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일 뿐 ‘체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방된 노비는 대부분 채무노비였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었는데 갚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노비로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생활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특히 전쟁 상황인지라 양식이 부족해서 노비에서 해방이 되고 주인 집에서 나와야 할 경우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노비로서 해방이 될 경우 토지가 없으니 임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임노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도시가 적합하고 대농장이 적합하다. 그런데 당시는 전쟁 상황이라 모두들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하는 상황이니 해방이 된 노비들도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손쉽게 해방된 노비들을 다시 데려 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왕이 주도적으로 노비 해방에 선두에 서서 실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비를 소유한 세력가들은 마지못해 계약에 응했지만 사

2) 17절에는 ‘형제와 이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노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후대의 수정 부분으로 볼 수 있다.

3) J. G. McConville,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262; ZB, LB, NIV, REB 등의 번역도 재귀의 뜻으로 번역함.

4) G. C. Chirichigno,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85.

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계약을 깨뜨리고 노비를 다시 복귀시켰다는 점이다. 즉, 왕은 노비해방을 하려고 하고 노비 소유자인 세력자들은 노비해방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계약법전(출 21:2-11), 신명기법전(신 15:12-18), 성결법전(레 25:39-55) 등의 노비 해방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안식년, 면제년, 희년 등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노비 해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면 굳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면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법전에 나타나는 노비 해방법이 과연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전에 포함된 용어들과 구절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계약법전의 경우 7년째 해에 ‘히브리 종’이 스스로 주인집에서 나갈 권리(**אֲנִי** 예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출 21:2), 신명기 법전에는 7년째 해에 주인이 노비를 해방시킬 의무가(**אֲנִי** 테살르헨누) 있음을 강조하였다(신 15:12).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서는 면제년 때 전국적으로 일시에 노비를 석방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신 15:1; 31:10). 그리고 계약법전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법전에서는 노비를 해방시킬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주어 보내도록 하였다. 즉, 채무로 인해 또다시 노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법전보다 신명기 법전이 종의 해방을 보다 더 확고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방된 노비의 경제적 면까지 보완한 법임을 알 수 있다.

계약법전의 경우 해방이 남종에게만 해당되고 있지만, 신명기 법전의 경우는 남녀 종 모두에게 행방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남녀종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신 15:12). 따라서 신명기법전의 저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계약법전을 알고 있었고 노비 해방을 확고히 하고 채무노비가 되는 원인까지 제거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즉, 신명기 법전은 계약법전의 노비 해방법을 새롭게 해석하였고 보다 더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결법전에 나타나는 희년법(레 25:39-55)은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

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신명기법전에는 종의 기간이 6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종이 자유했을 경우 평생 종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결법전에는 49년으로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결법전에서는 ‘동족 이스라엘 자손’인 ‘형제’는 결코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레 25:41-43, 46, 50-53). 그리고 성결법전은 해방을 시킬 때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였다(레 25:41). 또한 신명기법전에는 해방될 때의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결법전에는 종이 해방 될 때 토지도 함께 회복되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명기법전에는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근본적인 경제적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비해방방법에 있어서 성결법전은 신명기 법전보다 더 확고한 노비해방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6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 49년을 기다려야 해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그 긴 기간 동안 품꾼 대우를 해준다는 조건이 있어 감내할 수준이기는 하나 여전히 과도한 기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사건은 어디에 위치시킬 수가 있을까?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을 담은 예레미야 34장 8-22절과 신명기법전은 여러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드기야 왕의 경우 신명기법전과 동일하게 **שָׁלַח הַפְּסִי**(של라흐 호프쉬)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노비를) 자유롭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렘 34: 9, 10, 14, 16; 신 15:12, 13, 18). 그러나 계약법전은 ‘나가 자유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אֶצֵּא אֶתְּפִסִּי**(예체 호프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출 2 1:2, 5).

노비 해방 시기에 대해 예레미야 34장과 신명기 모두 ‘6년 동안 그가 너를 섬겼다(**שֵׁשׁ שָׁנִים עָבַדְתָּ אֶתְּפִסִּי** 아바드카 세시 샴)와 ‘칠년 끝에(**בְּעֵת שִׁבְעַת שָׁנִים** 미케츠 세 바아 샴)로 표현하고 있다(렘 34:14; 신 34:12). 그리고 노비를 취득할 때 예레미야 34장과 신명기 법전 모두 **לְקַח**(임마케르 르카)라고 표현하고 있다(렘 34:14; 신 15:12). 그러나 계약법전에는 **קָנָה**(카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출 21:2). 따라서 예레미야 34장은 계약법전보다 신명기 법전과 더 유사한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출애굽 때 맺은 계약, 즉, 노비 해방법은 출애굽기(21:2-11), 신명기(15:12-18) 등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 노비마다 시작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7년이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시점에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의 사건과 성결법전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예레미야 34장의 경우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해방’ 혹은 ‘자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דרור (드로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렘 34:8, 15, 17-2회). 특히 하나님은 ‘드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렘 34:17)고 하셨다. 그리고 ‘드로르’라는 용어는 성결법전에도 나타난다(레 25:10). 따라서 시드기야 왕의 사건과 성결법전과의 연관성을 연상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이 성결법전을 따랐다고 보기 보다는 고대 근동의 왕이 선포한 미샤람 칙령에 사용되었던 용어인 안두라룸(*anduratum*)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⁵⁾ 또한 ‘드로르’는 이사야 61:1, 출애굽기 30:2, 그리고 안식년을 선포하는 에스겔 46:17 등 비교적 후대 문서에 나타난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성결법전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해방된 노비의 경제적 대책에 관한 것이다. 성결법전에는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구나 일회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명기 법전의 내용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은 신명기 법전을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활용한 점이 있지만 성결법전과의 연관성은 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시드기야 왕은 동족이며 채무노비인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고 노비주인들인 세력가들도 이러한 법을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왜냐하면 노비 해방의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렘 34:8)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법전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 남녀 노비를 해방시킨 점과 용어의 유사성으로 보아 시드기

5) N. P. Lemche, "The manumission of slaves - the fallow year - the sabbatical year - the jobel year," VT 26 (1976), 52.

야는 신명기 법전을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신명기 법전을 온전히 준수하기보다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동기에서 노비를 해방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2) 광종의 노비 해방

고려에서는 광종이 노비 해방을 실제로 주도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노비 해방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먼저 시도한 바 있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노비가 된 사노비(私奴婢) 1,000여명을 속환시켰다. 사노비는 개인의 소유였기에 국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속환시켰다.⁶⁾ 즉, 호족들이 소유한 채무노비를 국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킨 것이다. 고려 태조는 등극한 그 해(918년) 궁예의 폭정을 비판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조서를 내려 사노비 1,000 여명을 속환시켰다.⁷⁾ 왜 왕건은 국가 창설 초기에 채무노비를 해방시켰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채무노비를 해방시켜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단서는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고 ‘속환시켰다(본가로 돌려 보냈다)’고 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⁸⁾ 즉, 노비의 소유주인 귀족으로부터 사노비를 유리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호족들의 반란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노비가 많아지면 호족들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조 왕건은 귀족들의 사노비를 모두 속환시키기를 원했지만 귀족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 태조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왕건의 태도를 본 호족들은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드디어 광종 대에 이르러 노비를 해방시켰다. 광종 7년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여 노비를 해방시킨 것이다.⁹⁾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자세한

6) 정인지 외, 「신편고려사」 1-1권 (신서원, 2002)을 이하 高麗史로 표기한다. 高麗史 1世家 太祖 원년 8월 辛亥 詔.

7) 高麗史 1世家 太祖 원년 8월 辛亥 詔

8) 홍승기, 「고려귀족사회와 노비」(일조각, 1983), 144.

9) 윗글, 158; 고려사절요 2, 광종 7년.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고려사 형법지의 노비항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기록은 없고 광종 대목왕후 열전과 관련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대목왕후가 광종의 노비 해방이 잘못된 정책임을 비판하였다는 기록에 노비안검법의 시행 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 그리고 오히려 성종 때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여 다시 노비화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려사를 저술한 귀족들이 노비 해방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¹¹⁾

광종은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노비 가운데 조상 전래의 상속노비를 제외하고 포로 출신이거나 매매로 인해 얻은 사노비를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받은 노비 이외의 노비는 불법이라는 명분에서 시행된 것이다.

노비안검법에 의해 해방된 노비들은 포로출신 노비와 매입하여 소유한 노비들이었다. 즉, 고려 건국 때 통일전쟁으로 인해 획득한 노비들과 그 후 거둬들인 정변에 의해 획득한 노비들, 그리고 가난에 의해,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노비로 전락한 채무노비들이 해방의 대상이 되었다.¹²⁾ 광종이 이러한 범위의 사노비들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은 사노비를 소유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포로출신 사노비는 과거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무장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사병이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호족들의 손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³⁾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 특히 호족들의 소유인 노비를 왕이 해방시킨다는 것은 왕으로서 큰 모험일 수밖에 없는데 광종은 성공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켰다. 광종 7년에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그 결과는 최승로의 상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종은 성공적으로 사노비를 해방시켰다. 광종이 노비 해방을 성공시킨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高麗史 88, 열전, 후비전, 대목왕후.

11) 정용숙, “《高麗史》 刑法志 奴婢項의 檢討,” 「한국사연구」 제46호 (1984), 82-83.

12) 전기용,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역사와 세계」 제9집 (1985. 6), 157.

13) 윗글, 156.

14) 高麗史 93, 최승로전, 성종 원년, 최승로상서. “전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 왕위계승 때 호족 세력의 약화: 광종은 949년 3월 25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26년간 통치하였다. 광종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정치세력은 반이나 제거된 상태였다.¹⁵⁾ 따라서 광종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환경은 즉위 때부터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비 해방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¹⁶⁾

(2) 초기 6년간의 선정: 광종은 초기 6년간 선정을 베풀어 능력 있고 공정한 지도자로 백성과 관리들의 신망을 얻었다. 특히 광종은 빈민을 구휼하고 흠아비와 과부 등을 구휼하여 소외층, 빈민계층에게 신뢰를 쌓았다.¹⁷⁾

(3) 개혁을 위한 인재 등용: 광종 7년에 북중국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인물을 등용하여 개혁을 위한 참모로 활용하였다.¹⁸⁾ 또한 광종 9년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왕실의 개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시켜 능력위주의 인재등용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과거제도를 통해 후백제 계열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기존의 호족세력을 약화시키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의 6두품 지식인들을 비롯한 국내의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하여 유교이념에 입각한 왕실 중심의 지배체제를 이룩하였다.¹⁹⁾

(4) 왕의 직속 시위대를 강화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광종은 지방의 무예가 있는 자들을 선발함으로써 평민계층에 기회를 주었고 왕의 개혁을 추진시킬 수 있는 친위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다.²⁰⁾

(5) 광종은 노비들을 해방시켜 왕실지지 세력으로 만들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 호족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²¹⁾ 광종은 노비에게도 고발

15) 백남혁, "高麗 光宗代 改革政治의 基盤과 成果" 『역사와 실학』 제23집 (2002. 1), 7.

16) 최승로 상서문, "혜종, 정종, 광종의 세 임금이 서로 왕위를 계승할 초년에 모든 일이 안정되지 못할 때에 양경(兩京)의 문문관이 반이나 이미 살상되었다". 하현강은 "광종은 우선 정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정종을 지지하던 서경세력을 적지 않게 숙청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일조각, 1988), 112.

17) 백남혁, 원글, 8.

18) 전기용, 원글, 145. 이외에도 상당수 중국인이 귀화하여 세력을 형성하였기에 호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규성, "고려초기 정치세력과 정치체제 연구," 1988 단국대 박사논문, 297.

19) 백남혁, 원글, 9-12.

20) 최규성, 원글, 305.

21) 백남혁, 원글, 34.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소량(訴良)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²²⁾ ‘소량’이란 억울하게 천인(賤人)이 된 자가 양인(良人)이 되려고 호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량(訴良)이 허락된 노비는 전쟁포로 출신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팔린 채무노비들에 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비가 주인을 모함하는 일도 일어났다.

(6) 불교승려 및 신도들을 왕실 지지세력으로 만들었다. 특히 보시(布施) 신앙을 통해 빈민층을 왕실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²³⁾ 그리고 노비해방은 불교의 평등사상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광종은 귀법사에 무차대회(無遮大會)를 개설하여 잔치를 열어 널리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처럼 광종이 노비 해방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비 해방 자체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성종 때에 노비환천법을 제정하고 귀족정치가 되살아난 것을 보아 광종의 개혁과 왕권강화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왕권강화

고려 시대 광종의 경우를 보면 철저히 왕권강화를 위해서 노비를 해방시켰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을까? 물론 성이 함락될 위기에서 왕권강화까지 염두에 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시드기야가 왕권강화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시드기야는 즉위 초부터 취약한 왕권 때문에 시달려왔었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주전 596-586)는 처음부터 왕권이 약했다.²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는 믿음과 시온신학에 젖어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22) 홍승기. “高麗時代 私奴婢의 法制上 地位,” 『한국학보』 4권 (1978), 63-65.

23) 백남혁. 『뫼글』, 34.

24) 느부갓네살은 여호아킨을 대신하여 맛다다야를 유다 왕으로 임명 했는데 왕명을 시드기야로 불렀다.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의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이기도 한 립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루달이었으며 왕위에 오를때 나이는 21세였다(왕하 24:17-18).

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사실(주전 597)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으며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킨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드기야가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시드기야에 대한 거부감은 1차 예루살렘 점령 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호야킨의 연호를 사용하고 시드기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오년...”(겔 1:2)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여호야킨 왕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시드기야 왕권의 약한 모습은 그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시드기야(**שִׁדְרִיָּא**)라는 왕명은 “야웨는 나의 의”란 뜻인데 시드기야가 정당하며 합법적인 왕임을 과시하는 이름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유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즉위식 때 시드기야를 지지하는 신탁을 선포하기도 하였다.²⁵⁾

이러한 시드기야가 왜 반바벨론으로 돌아섰는가? 이집트 왕 삼메티쿠스가 그의 통치 제 4년(주전 592-591)에 팔레스틴을 통과하여 행진하였다. 라일랜드 파피루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 왕의 행보는 종교적이었으며 파라오의 위세를 시위하는 개신 행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⁶⁾ 그런데 파라오가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사건은 유다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친 이집트파의 득세와 반 바벨론의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아마도 이 때 파라오와 시드기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겔 8:17).²⁷⁾ 왜냐하면 특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었던 귀족들과 지주들은 친이집트로 뭉쳤고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압박을 가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드디어 시드기야도 친이집트 정책을 취하였고 바벨론에 바치는 조공을 중단하여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표면화하였다(겔 17:13-21,

25) R. P. Carroll, *Jer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610. 정중호, 「예언서의 기원과 해석」(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27-28.

26) F. L. Griffith ed., *Catalogue of the Demotic papyri in the John Rylands Library*, vol. II,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09), 64-65.

27) 에스겔 8장은 파라오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내용이라 짐작되며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다”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형식이라 볼 수 있다. H. W. F. Saggs, “The Branch to the Nose,” *JTS* 11(1960), 318-329; M. Gruber, “Akkadian Laban appi in the light of Art and Literature,” *JANES* 7(1973), 73-83.

20:1). 라기스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에도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장군 엘나단의 아들 고니야가 이집트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했다는 내용과(참조; 쥘 17:15) 유다 군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조공을 중단한다는 것은 곧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 중대한 문제이고 바벨론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공할 재원을 마련해줄 귀족들과 지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권이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귀족들과 지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왕이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까이 있는 이집트가 충동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집트와 계약을 맺고 바벨론에 조공을 중단하는 것이 시드기야가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가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에 조공을 중단하고 반기를 드는 일은 자주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예측은 빗나갔다. 바벨론 군대가 대거 몰려온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 하였다. 비록 왕권이 약했지만 세력가들도 왕의 지휘로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비해방을 실시하였다. 그것도 시드기야 왕의 주도로 노비해방을 실시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노비해방을 실시하였는가?

시드기야가 노비해방을 시행한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기존 주장을 요약해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앙적인 목적에서 노비해방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수많은 바벨론 군사를 볼 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다. 브라이트(J. Bright)는 노비해방을 ‘회개’의 표시로 보았다. 적군의 포위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회개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것이라 보았다.²⁹⁾ 왜냐하면 당시 세력가들과 부자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 하여 동족인 히브

28) ANET 322 ; 오스트라콘 III.

리인들을 노비로 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채무노비의 관행은 하나님 의 의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행에 대해 중단을 선언하며 회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채무노비를 해방시켜 하나님이 명하신 노비 해방 법을 따르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 하는 학자는 바이저(A. Weiser)였다.³⁰⁾

그러나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 만약 회개의 표시로 노비를 해방시켰다면 바 벨론 군대가 포위를 푼 뒤에 다시 노비들을 붙잡아 오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노비를 해방시킬 수는 있지만 그 뒤의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했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신앙적인 목적에서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주장 가운데 사르나(Nahum M. Sarna)는 시드기야 왕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 노비를 해방시켰다고 보았다.³¹⁾ 이러한 주장은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을 출애굽 때 맺은 계약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드기야 사건을 설명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후대의 부분(렘 34:13-16)과 유사할 뿐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낄 수가 있다. 정말 시드기야는 안식년을 지키려한 것이었을까? 정작 시드기야는 계약을 맺고 노비를 해방시킬 때 이전의 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렘 32:8-11).³²⁾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회개의 표시로 히브리인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식년을 준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시드기야가 면제년, 안

29) J. Bright, *Jerem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1 (Doubleday & Company, 1965), 223-224.

30) A. Weiser, *Das Buch des Propheten Jeremia*, ATD 20/21, 5. Aufl. (1966), 311-312.

31) Nahum M. Sarna, "Zedekiah's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sabbatical year," in H. A. Hoffner ed., *Orient and Occident: Essays presented to Cyrus H. Gordon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AQAT 22 (Neukirchener Verlag, 1973), 143-144.

32) Simeon Chavel, "'Let my people go!' Emancipation, revelation, and scribal activity in Jeremiah 34,8-14," *JSCOT* 76 (1997), 74; M. Weinfeld, "Sabbatical Year and the Jubilee in the Pentateuchal Laws and their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in T. Veijola ed., *The Law in the Bible and in its Environment* (Helsinki: The Finnish Exegetical Society, 1990), 39-42.

식년, 희년 등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주장으로 프라이드와 프리드만(Lisbeth S. Fried and D. N. Freedman)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시드기야가 희년 때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주장이다.³³⁾ 희년이 언제인지 년도 계산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도 있고 안식년을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둘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노비해방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채무노비가 해방되어 양민이 되면 전투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으니 예루살렘의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의 신분보다는 양민의 신분이 될 때 전투의 욕이 고취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높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적인 동기에서 노비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데이비드(M. David)와 루돌프(W. Rudolf)였다.³⁴⁾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목적이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전투력과 상관없는 ‘여중’까지 해방시켰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폴쯔(P. Volz)와 두움(B. Duhm)은 노비 주인들이 노비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제이콥슨(Rolf A. Jacobson)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1) 7년째 해방시키라는 율법서의 노비 해방법과 시드기야 왕이 행한 노비해방은 다른 점이 많고, 2) 만일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개의 표시로 노비를 해방시켰다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물러간 후에 노비를 다시 잡아들이는 행동이 나왔을 것인데, 이집트 원군을 저지하려고 잠시 포위를 푸는 사이에 급하게 노비를 잡아들이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 3) 적군이 성을 포위하면 양식이 극도로 부족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사 7:1-6).³⁵⁾

33) Lisbeth S. Fried and D. N. Freedman, "Was the Jubilee Year Observed in Preexilic Judah?" J. Milgrom, *Leviticus 23-27* (Doubleday, 2001), 2257-2270.

34) W. Rudolph, *Jeremia, HAT I 12*, 2 (1958), 203-205; M. David, "The Manumission of Slaves under Zedekiah", *OTS*, 5 (1948), 63.

35) B. Duhm, *Das Buch Jeremia, KHAT XI* (1901), 279-281; P. Volz, *Der Prophet Jeremia, KAT 10* (1922), 317-318; Rolf A. Jacobson, "A freedom that is no freedom: Jeremiah 34 and the Sabbatical Principle," *Word & World*, vol. 22 number 4 (2002), 398.

그러나 양식이 부족해서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만일 양식이 부족해서 노비를 해방시켰다면 왕이 나서기 전에 노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노비들을 해방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노비해방은 왕이 주도하였고 노비 소유주들은 마지못해 수용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사이 급하게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인 모습을 보면 양식이 없어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양식이 극도로 부족했다는 요인이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차벨(Simeon Chavel)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노비해방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⁶⁾ 차벨은 이 요인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사실 중요한 요인이다. 광종의 노비 해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호족들이 소유한 사노비를 해방시킨다는 요인이다. 실제로 광종은 사노비를 해방시켜 호족들의 세력을 급격히 약화시켰는데 그 다음 왕위에 오른 경종 때의 상황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경종이 즉위할 때는 호족 세력이 40명밖에 살아남지 않을 정도로 약화되었다.³⁷⁾

왕이 사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광종의 경우에는 즉위 초부터 왕권을 강화하여 사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에 사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한편 시드기야 왕은 왕권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할 형편이었지만 이 위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노비해방은 시드기야의 왕권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비는 세력가들의 재산임과 동시에 군사력이 될 수 있는데, 세력가들의 노비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력가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노비 해방을 주도한 시드기야 왕은 비록 왕권이 약한 상태였지만

36) Simeon Chavel, *윗글*, 73.

37) *백남혁*, *윗글*, 35.

예루살렘 성이 풍전등화같은 상황인지라 세력가들도 노비해방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의 히브리인 채무노비는 해방될 수 있었다. 만일 바벨론 군대만 퇴각한다면 시드기야 왕은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놓칠 왕은 없다. 그리고 세력가들이 이집트 원군으로 인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집트와 전투를 하러 갔기 때문에 포위망이 잠시 해제된 사이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인 정황을 보더라도 이 노비해방 사건은 세력가들의 권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극적인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부터 세력가들은 노비를 해방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했을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망을 풀자마자 세력가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하게 노비들을 다시 잡아 들었던 것이다. 위기를 당해 위급할 때는 무엇이든 할 것 같았지만 위기를 넘겼다 싶으면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노비 해방은 왕과의 계약인데 어떻게 귀족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노비를 다시 붙잡아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왕의 권력이 무척 약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과의 계약을 무시할 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세력가들이 채무노비는 해방시켰지만 외국인 노비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기에 세력가들의 세력은 어느정도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세력가들의 위세에 휘둘리고 있었다.

노비해방은 충격적인 정책으로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드기야 왕의 경우는 출애굽 사건에서 채무노비 해방의 근거를 찾았다(렘 34:13-14).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는 또 다른 노비 해방법은 신명기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신 15:12-15) 예레미야 34장과 유사한 점이 많다. 출애굽 사건을 노비 해방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성결법전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레 25:42)라고 천명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동족이 노비로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대하라고 하였다(레 25:39-40).

즉,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비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레 25:42, 55)이라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출하여 해방시킨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을 사람이 함부로 노비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노비)’ 즉,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논리 위에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인 왕은 귀족들이 노비를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당시 유대의 백성들 즉, ‘히브리인’은 모두 출애굽한 백성들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 출애굽한 백성과 다양한 경로로 팔레스틴 남쪽 산지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조상이라는 신앙적이며 사회적인 정신과 이념을 받아들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앙적이며 사회적인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시드기야 왕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채무노비 해방을 주도하였다.

고려의 광종은 노비해방의 근거를 주로 압량위천(壓良爲賤)에서 찾았다. 빚을 갚지 못해 양민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시드기야 왕과 마찬가지로 광종도 채무노비를 해방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광종은 시드기야 왕보다 범위를 더 확대했는데 화매나 전쟁 등을 통해 새롭게 노비가 된 자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민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³⁸⁾ 이는 귀족들이 노비를 사병화시켜 개인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대로 세습되어 상속한 노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비문서를 보관하여 공인해주었다.

시드기야와 광종 모두 채무노비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노비 해방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송대의 대표적 법전인 송형통과 경원조법사항에는 양민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노비로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였다; “무릇 부채 때문에 인구(人口)를 인질로 삼아 저당하는 것 - 허위로 인력, 여사(女使)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동일하다-은 장100대에 처한다”.³⁹⁾ 이처럼 채무노비를 불법이라 선포하면서 노비해방을 주도하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8) 이상국, “고려 정종 5년(1039) 賤者隨母之法’의 제정과 그 의의,” 사림 34호 (2009), 88.

39) 慶元條法事類 권80, 잡문, 잡력, 599; 이석현, “송대 불법적 예속민의 성립과 국가권력,” 『동양사학연구』 제 86집 (2004), 106

4. 결론

본 논문은 고려 광종의 노비 해방 사건을 참조하여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시킨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시킬 때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강조하면서 노비를 해방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왕권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 사건을 연구하였다.

예레미야 34장 8-22절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은 왕이 노비해방을 주도하고 노비 소유자인 세력가들과 계약을 맺어 노비 해방을 실시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세력가들이 이러한 노비해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사이 급하게 노비들을 다시 불러들여 소유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드기야 왕과 세력가들은 적어도 계약법전(출 21:2-11)의 내용과 신명기 법전(신 15:12-18)을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전을 온전히 준수했다보다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동기에서 노비를 해방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고려 광종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를 해방시켰다. 즉위 초기부터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귀족들이 소유한 사노비를 해방시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광종의 경우를 염두에 두면서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기를 당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기 위해 노비를 해방시킨 점도 있었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드기야가 세력가들의 노비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즉위 초기부터 왕권이 약해서 세력가들에게 휘둘리고 있었기에 세력가들의 사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출애굽 사건에서 노비해방의 근거를 찾았고 광종은 압량위천에서 그 근거를 찾았음을 발견하였는데 이 모두가 채무노비를 해방시키는 근거임을 알 수 있었다.

5. 참고문헌

- 백남혁. “高麗 光宗代 改革政治의 基盤과 成果,” 「역사와 실학」 제23집 (2002), 5-37.
- 이상국. “고려 정종 5년(1039) ‘賤者隨母之法’ 의 제정과 그 의의,” 사림 34호 (2009), 79-104.
- 이석현. “송대 불법적 예속민의 성립과 국가권력,” 「동양사학연구」 제86집 (2004), 95-124.
- 정용숙. “《高麗史》 刑法志 奴婢項의 檢討,” 「한국사연구」 제46호 (1984), 61-89.
- 전기웅.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역사와 세계」 제9집 (1985), 139-169.
- 정인지 외, 「신편고려사」 1-11권 (신서원, 2002).
- 정중호, 「예언서의 기원과 해석」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 최구성, “고려초기 정치세력과 정치체제 연구,” (1988) 단국대 박사논문.
- 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88).
- 홍승기. “高麗時代 私奴婢의 法制上 地位,” 「한국학보」 4권 (1978), 28-71.
- Bright, J., *Jerem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1 (Doubleday & Company, 1965).
- Carrol, R. P., *Jer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Chavel, Simeon., “‘Let my people go!’ Emancipation, revelation, and scribal activity in Jeremiah 34,8-14,” *JSOT* 76 (1997), 71-95.
-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David, M. “The Manumission of Slaves under Zedekiah”, *OTS*, 5 (1948), 63-79.
- Duhm, B. *Das Buch Jeremías*, KHAT XI (1901).
- Fried, Lisbeth S., and Freedman, D. N. “Was the Jubilee Year Observed in Preexilic Judah?” Milgrom, J.,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2257-2270.
- Glass, Zipporah G.,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OT* 91 (2000), 27-39.

- Grittith, F. L., *Catalogue of the Demotic papyri in the John Rylands Library*, vol. II,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09).
- Gruber, M., "Akkadian Laban appi in the light of Art and Literature," *JANES* 7 (1973), 73-83.
- Jacobson, Rolf A., "A freedom that is no freedom: Jeremiah 34 and the Sabbatical Principle," *Word & World*, vol. 22 number 4 (2002), 396-405.
- Lemche, N. P., "The manumission of slaves - the fallow year - the sabbatical year the jobel year," *VT* 26 (1976), 38-59.
- Lipinski, E., "Etudes sur des textes messianiques de l'Ancien Testament," *Semitica* 20 (1970), 41-70.
- McCarthy, E. J., *Treaty and Covenant* (2d e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 Miller, P. D., "Sin and Judgment in Jeremiah 34:17-19," *JBL* 103/4(1984), 611-613.
 _____, *Sin and Judgement in the Prophets: A Stylistic and Theological Analysis* (SBLMS 27; Chico, CA; Scholars Press, 1982).
- Rudolph, W., *Jeremia*, HAT I 12, 2 (1958).
- Sarna, Nahum M., "Zedekiah's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sabbatical year," in H. A. Hoffner ed., *Orient and Occident: Essays presented to Cyrus H. Gordon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AOAT 22 (Neukirchener Verlag, 1973), 143-149.
- Saggs, H. W. F., "The Branch to the Nose," *JTS* 11(1960), 318-329.
- Volz, P., *Der Prophet Jeremia*, *K A T* 10 (1922), 317-318.
- Weiser, A., *Das Buch des Propheten Jeremia*, ATD 20/21, 5. Aufl. (1966).
- Weinfeld, M., "Sabbatical Year and the Jubilee in the Pentateuchal Laws and their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in Veijola, T. ed., *The Law in the Bible and in its Environment* (Helsinki: The Finnish Exegetical Society, 1990), 39-62.

검색어

채무노비
노비 해방
시드기야
광종
왕권강화

The emancipation of king Zedekiah and the strengthening of his throne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ompare cases of emancipation involving king Zedekiah in the Hebrew Bible and King Gwangjong of the Goryeo dynasty, so that the present writer may find what is the motivation and purpose lying behind the events. Particularly in this paper, the present writer concentrated on the factors of social integr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se King's respective thrones.

In the case of emancipation of Jeremiah 34:8-22, the king initiated emancipation by contracting with the influential slave owners, influential, the influentials. Although they comply with the contract, their minds were reluctant to accept the act of emancip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the cases of emancipation under king Zedekiah and Gwangjong of Goryeo

dynasty, it is assumed that the king Zedekiah and the slave owners had knowledge of the Covenant Code (Exod 21:2-11), the Code of Deuteronomy (Deut 15:12-18). However, they did not fully comply with the laws of the codes. It seems that they freed the slaves out of complex motivations along with other factors.

Meanwhile, in the case of king Gwangjong, the king liberated slaves wholly for strengthening the royal throne. From the beginning onward king Gwangjong strengthened the throne. On the basis of the strengthened power of the throne, the king liberated the slaves owned by the no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Zedekiah's emancipation event,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throne was an important factor along with the factors of the military power and the religion. It is because the king Zedekiah's power was weak from the beginning of enthronement. To liberate slaves owned by the nobles was a golden opportunity to enhance the power of throne.

And the king Zedekiah found the ground of emancipation in the Exodus, while king Gwangjong did it in the general consensus that debt slavery was illegal. Actually both grounds were used for liberating debt slavery.

Keywords

Debt slavery

Emancipation

Zedekiah

Gwangjong

Strengthening the throne

- 투고일: 2012년 4월 1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